

국유재산 [√] 대부 [] 매수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20일				
신청인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)등록번호					
	주소						
	전화번호	이메일(e-mail)					
대부로 환급계좌	은행명	계좌번호					
신청내용	재산의 표시			신청면적 (㎡)	용도	피대부자 또는 매수자	대부기간
	소재지	지목	공부면적(㎡)				

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대부/매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자산관리공사 귀하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 직원의 확인사항	1.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. 중소기업확인서(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----------------------	--

※ 대부요율 안내 (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)

구분	원칙	예외							
		1호	2호	3호	4호	5호	6호	7호	8호
목적	-	경작	주거 (기초수급자)	행정	공무원 후생목적	사회복지/ 종교단체 등	소상공인	지자체	사회적 기업 등
대부료율*	5%	1%	2%(1%)	2.5%	4%	2.5%	3%	2.5%	2.5%

* 모든 대부료율은 정해진 기준“이상”으로 규정

처리절차



※ 신청제산에 대한 확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신청결과 통보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.

유의사항

- 2인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.
- 국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.


대부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

- 귀하의 대부 신청에 앞서 본 체크리스트를 통해 국유재산 대부에 대한 주요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
 - ※ (대부 절차) ① 대부 신청 → ② 대부 심사 및 승인 → ③ 결과 안내 및 대부로 납부(계약체결) → ④ (계약 종료) 국유재산 반환 혹은 계약 갱신 신청
- 우리 공사 직원으로부터 각 항목마다 안내 받으시고 **고객확인란**에 √ 부탁 드립니다.

대부 단계	주요 내용	고객 확인
① 대부 신청	국유재산 대부를 신청하였더라도 검토 과정에서 대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	✓
② 대부 심사 및 승인	대부계약 기간은 5년 이하이며 대부료 는 1년마다 선납하여야 하고, 대부료 납부 후에 계약이 체결됩니다.	✓
③ 결과 안내 및 대부로 납부(계약 체결)	대부료 는 해당 국유지의 재산가액*(개별공시지가 x 면적)에 사용용도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여, 연도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. * 경작용 국유지의 재산가액은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입입니다.	✓
④ (계약종료) 국유재산 반납 혹은 계약 갱신 신청	(종료 희망) 대부 계약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원상회복 후 반환하셔야 합니다. 원상회복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	✓
	(갱신 희망) 대부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대부계약 종료 1개월 전에 대부신청서 를 우리 공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. (경쟁입찰의 경우 1회만 갱신 가능)	✓
기타 유의 사항	대부 받은 국유재산은 반드시 대부계약 목적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 목적 위반 시 계약 해지 될 수 있습니다.	✓
	대부재산의 전대 (제3자에게 사용·수익), 대부재산의 상태 변경 , 연체 등 대부계약서 제8조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.	✓
	대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 설치 는 불가하며, 가설 건축물 설치 시 사전에 신청 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.	✓

[청렴 캠페인]

- 우리 공사와 업무 수행 중 공사 직원으로부터 항응 요구 등 부패 경험을 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한국자산관리공사 부패 신고센터
[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(www.kamco.or.kr) - 국민참여 - VOC(고객의 소리) - 신고센터]



※ (부패 신고센터)